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328호
2. 발 의 자 : 심미경 의원 등 28명
3. 발의일자 : 2025년 1월 20일
5.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법」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교육환경 관리를 위한 여러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도시 특수성(예: 높은 인구 밀도, 상업 시설의 밀집, 대규모 재개발 등)으로 인해 평가나 규제,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음. 특히,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소음이나 공해 등의 구체적인 허용 기준, 특정 지역에서 제한되는 시설의 종류, 허가 절차 등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명확하게 규제를 설정하기 어려워, 평가의 일관성이나 실효성이 낮아 주민 및 학생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서울시와 각 자치구 간의 세부적인 역할 분담이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여 주민 및 학생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교육환경평가 결과의 관리 및 실행에서 주민 민원 및 갈등 등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주민의 만족도와 신뢰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III. 주요내용

- 책무(제4조)
 -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환경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첨 3〕

다. 입법예고: 2025.2.11.~ 2.15.(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0일 심미경 의원 등 28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2328호로 발의되어 2025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에게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 등 학교구성원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안 제3조제3항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의 상위법인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교육환경법’에서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교육감은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¹⁾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연도별 세부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내용과 추진일정, 예산기획 등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수립·추진하고 있는 세부 추진계획은 교육부의 주요 전략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정작 교육환경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시 학교내·외의 다양한 환경적 영향이 고려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시책의 일관성 및 실효성이 낮아 주민 및 학생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할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 따라서 안 제4조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제 교육현장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바,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3조의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중 ‘학생’ 과 ‘지역주민’ 을 삭제하고, ‘교직원’ 을 추가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69, 2025. 2. 13.).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내용 및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안 제3항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시책수립에 있어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의견 수렴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안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법해석상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또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동 조례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이해관계자일 수 있는 학생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인바, 일부 특정 대상을 제외해달라는 교육청의 의견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 | |
|----------|--------------------|-------|--------------------|
| 의안심사지원팀장 | 정진국 (2180-8263) | 입법조사관 | 이현주 (2180-8272) |
|----------|--------------------|-------|--------------------|